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82
----------	-----

제출년월일 : 1999. 5.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98. 12. 31일 법률 제5615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고자함.

☐ 주요골자

종전에는 동 1,800원, 읍·면 1,000원으로 부과하던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자치단체의장이 1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하고있어, 주민세고지를 위한 등기우편료(1,170원)와 기타 정세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동 4,000원, 읍·면 3,000원으로 상향조정 하고자함.

☐ 참고사항

-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 표준안
- 주민세 개인균등할 세율인상에 따른 권고안
- 조례개정에 대한 반대의견서.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중 “개인”을 “개인의 세율”로 하고 동항제1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1호 나목중 “개인”을 “개인의 표준세율”로 하고, 동항제2호 본문중 “법인”을 “법인의 표준세율”로 한다.

가. 시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동 : 4,000원, 읍·면 : 3,000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사유
제22조(세율) ① 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개인 가.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 동 : 1,800원 읍·면 : 1,000원 나. 시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 : 50,000원 2. 법인 (생략)	제22조(세율) ① 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개인의 세율 가. 시의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동 : 4,000원 읍·면 : 3,000원 나. 시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의 표준세율 : 50,000원 2. 법인의 표준세율 (현행과 같음)	지방세법 제176조, 개정